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6. 23.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6년 6월 5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2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6년 6월 22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은)

가.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18조(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내지 제21조의 규정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폐지조례안은 1998. 4.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법 제18조(편의시설 촉진기금의 설치)규정에 따라 2001.9.27. 조례 제503호로 제정·운영하였으나, 2003년부터 일반회제로 사업이 이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2004.1.1부터 개정(삭제)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운용기금(2억1천3백만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회제로 여입해야 할 것임

4. 審査結課 : 原案可決